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539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피 고 B사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2. 접수 제24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한도)금액	비고
1	2018.05.31.	일반자금대출	828,000,000원	대출1
2	2018.09.07.	일반자금대출	484,000,000원	대출2
3	2019.02.18.	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	대출3

2) D는 2021. 1. 5.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1. 2. 14.를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합계 1,333,748,818원이었다.

나. C과 피고의 증여계약

C은 2019.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1. 22.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 화성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 20.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순수한 불심과 피고 사찰의 안녕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사찰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C의 무자력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양진호

부동산 목록

1. 평택시 E 임야 397㎡, 끝.

